



## 전공동아리운영규정

제 정 일	2016. 5. 1
개 정 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학생서비스과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 )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창의적 개발능력과 심화된 현장중심 실무 적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학부(과) 중심의 소그룹 전공동아리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참된 인격과 창의적 기술 개발력을 갖춘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- 제 2조 (구성) 본교 전공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구성 할 수 있다.
1. 전공동아리는 본교 재학생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  2. 전공 동아리별 지도교수는 전공별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 
단, 전공 동아리 지도교수는 교내 타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.
  3. 전공 동아리 활동은 각 소속 학부(과) 전공 및 기술분야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.
- 제 3조 (등록) 전공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전공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
  2. 회원명단 1부 및 회원 전원의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
  3. 동아리 회칙 1부
  4. 연중 운영계획서 1부
  5. 전공동아리 공간 운영계획 1부
  6. 전공동아리 운영비 조달방법 및 예산내역 각 1부
  7. 기타 (등록신청 공고 시 별도 지정)
- 제 4조 (승인) 전공동아리의 승인은 학생처에 등록 신청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 5조 (등록 취소 또는 지원불허) 등록된 전공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을 취소 또는 지원을 불허 할 수 있다.
1.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
  2. 학칙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3. 3년 이상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
  4.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
- 제 6조 (동아리 지원범위) 전공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들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.
1. 전공동아리실은 학부(과) 보유공간 활용
  2. 전공동아리 활동을 위해 활동목적성 경비, 물품지원, 외부활동 경비 지원
  3. 기타 동아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 7조 (활동참여) 전공동아리는 전공동아리관련 대학 전체 행사 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- 제 8조 (활동평가 및 결과보고) ① 전공동아리 지도교수 및 동아리 대표는 매 학년도 말 지정된 기간에 전공동아리 활동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지원경비 정산서를 학생처로 제출하고 활동

실적 결과 심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전공동아리 활동 중 교내 전시활동(2개 이상의 전공동아리가 동일 목적의 작품활동 포함)에 참가한 경우에는 활동실적 심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전공동아리 활동 경비 지원은 전공동아리 활동 실적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제 9조 (평가위원회) ① 전공동아리 활동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평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